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2조의2에따라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활동을 원활히 하게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○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
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○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○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○ 위원회 간사, 위원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～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2조의2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6671(2017.7.20.)]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47761(2017.8.30.)]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7.8.31.～ 2017.9.20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예방·대비 및 복구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본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』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, 재난발생 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복잡,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인적·물적 자원의 신속한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